

품목분류(HS) 국제분쟁 고위험 물품 플라스틱 광학시트 수출기업 지원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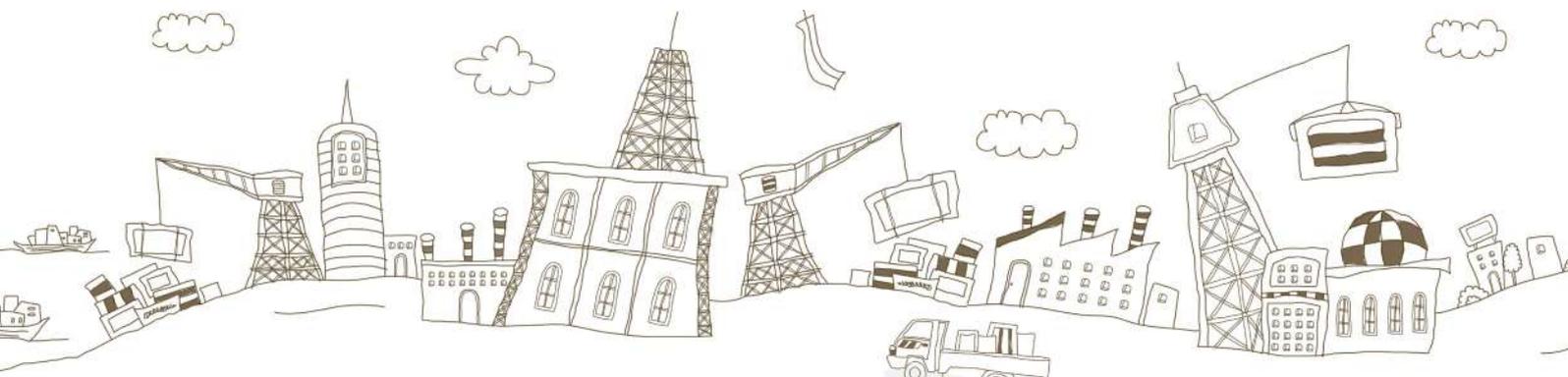
관세청은 외국 세관과의 품목분류(HS)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평가분류원 내에 「HS국제분쟁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제무역시장은 신보호무역주의 확대에 따라 HS분쟁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에도 신보호무역주의 심화에 따라 분쟁 증가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우리 중소 수출기업들은 인력과 정보 부족 등 문제로 대응을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분쟁해결 성공사례 분석을 통해 향후에도 분쟁 개연성이 있는 품목정보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니, 비슷한 사안이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HS국제분쟁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분쟁 해결 사례

- 중소기업 A사는 중국에 ‘롤 형태의 프리즘 필름’을 수출하였으나, 중국세관의 **반덤핑관세 부과 위기**에 직면해 **HS국제분쟁신고센터에 긴급지원을 요청**했다.
- A사는 관세 2%가 적용되는 제9001호(광학용품)로 수입통관 해왔으나, 중국세관은 광학용품으로 사용하기 위해 특정 모양으로 절단된 것이 아닌 롤 형태이므로 광학용품이 아닌 ‘플라스틱으로 만든 시트’로 판단해 반덤핑관세(46%)가 부과되는 제3920호라 주장했다.
- 관세평가분류원은 중국세관과의 실무자 협상 이후 분류의견서를 신속하게 제공하였고, **중국세관에서 우리 의견을 최종 수용**함에 따라 A사는 **관세 약 60억 원을 절감**하고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품목분류(HS) 국제분쟁 고위험 물품 플라스틱 광학시트 수출기업 지원 안내

분쟁 발생 가능성 체크사항

- **(쟁점물품)** 광학효과가 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시트
- **(분쟁요인)** 의도한 광학효과를 내도록 제조된 플라스틱 시트는 제39류(플라스틱 제품)에서 제외되어 제90류(광학기기)에 분류되나,

일부 국가는 ‘의도한 광학효과’에 대한 해석과 소재·형상에 따라 쟁점물품을 단순 플라스틱 시트가 분류되는 제3919호 또는 제3920호로 분류할 가능성 있음

※ 분류 기준(제9001호 해설) : “광학용품(optical elements)은 의도하는 광학효과를 나타내도록 제조한다. 광학용품은 빛(가시광선·자외선·적외선)이 단순히 투과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투과는 여러 가지 방법(예: 반사·감쇄·여과·분산·조준 등)에 의하여 변형한다.”

- **(발생가능 국가)** 쟁점 품목번호에 세율 차이가 있는 중국, 태국, 베트남, 인도

컨설팅 안내

- 현재 HS분쟁 중에 있는 경우 관세평가분류원 「HS국제분쟁신고센터」에 상담 (☎ 042-714-7539/7522)
- HS분쟁이 발생되지 않은 경우라도 분쟁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수입국 관세당국 또는 우리나라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신청방법: 관세평가분류원 홈페이지 참조)

